

내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2021.08월 기준)

1. 정보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단,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비교형량의 원칙
 -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함
- 법령의 적용 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판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서, 이를 확대·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3. 행정정보 비공개 기준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 목 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 세부기준	3
2. 본사 (부서별) 세부기준 및 사례	19
3. 지역본부 (업무별) 세부기준 및 사례	23

본사 및 지역본부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례(19p~30p)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수립·작성한 것으로,

해당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비공개 요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공개 유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사례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되어야 함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비공개 요건

정보가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유형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총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법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유로도 비공개 가능)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노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서울행정법원, 1999. 2.25)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관련 사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서울행법 1999. 2.25. 98구392)**

⇒ 비공개

☞ “진행 중인 재판” 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해설

- ‘감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포함하며, 감사원의 감사 외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도 포함됨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유형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 (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 (검사)

□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사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절한 운영, 적절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절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대법원 2003. 8.22. 2001두12946)

□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친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절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보조금 용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 가능

관련 사례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안건) 공개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6-0128, 2006. 8. 22) ⇒ 비공개

☞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 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도리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 으로 판단해야 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

☞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 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해당됨**

-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해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 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에 의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포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사항 :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와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처리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관련 사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 비공개**

- ☞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해설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 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가능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경리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활동의 결과 국민의 제한, 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
 -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례 (본사 - 부서별)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사업계획실	사업협의제도 운영 . 관리	사업협의 관련문서	8호
	사업다각화 조정 관리	10년 공공임대 유형변경 대응 협의체 운영(안) 문서	5호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총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질의 답변서	5호
판매기획처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7호
	토지판매 관련 운영총괄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적용관련 방침문서	7호
		특정기간동안 공사가 거래한 토지 및 건물 거래(매입 또는 매도) 내역	7호
보상기획처	보상 관련 총괄	보상실무 편람	7호, 8호
	보상관련 소송대응 지원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 수행의뢰 문서	4호
총무고객처	고객만족 경영전략 수립	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 방침 문서	7호
인사관리처	신입사원 공개채용	타인의 채용시험 성적 (필기, 면접, 커트라인, 평균점수, 등수)	6호
		최근 5년간 입사자 출신대학, 지역, 성별, 나이	6호
법무실	소송업무 총괄	소장이첩 문서 (진행중인 소송관련)	4호
공정계약단	공사계약 입찰 및 계약	특정업체 입찰내역에 관한 자료	5호, 7호
박물관	사업지구 문화재업무 총괄	문화재조사 지표용역 시행방안 및 용역관리자 지정 문서	5호

주거복지기획처	임대주택 임대조건 승인	임대주택 임대조건 승인 자료	7호
	공가해소대책 수립	공가관리 업무처리 지침	7호
주거복지사업처	매입·전세임대 공급 및 운영 총괄	다가구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 주택 리스트, 지역별 공실률	7호
		매입임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면접관 및 현장진행요원 성명	6호
		매입·전세임대 목표달성방안 수립문서	5호, 7호
스마트도시계획처	신규 후보지 추진계획 총괄	지구지정 제안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문서	5호
공공택지사업처	공공주택지구 설계기획 총괄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조치결과 문서	5호
도시사업처	기반시설공사 인허가.설계 기본실시설계, 공사발주 등	주민입주대비 기반시설 등 정주요건 확보요청 문서	5호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협의의견 문서	5호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 방침 시행문서	5호
도시기반처	녹색건축인증 총괄	건축설계용역 관련문서 - 녹색건축인증 취득 관련 사항	7호
	도시기반시설 전기 등 총괄	공공주택지구 공원 등 전기공사 심사의뢰 문서	5호
사업영향평가단	교통분야 총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관련 회의결과 문서	5호
		3기 신도시 관련 고속도로 자료 및 도면	5호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 총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문서	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협의내용, 조치계획, 평가준비서, 공청회 등)	5호
	환경영향성 평가위원 선정방법, 선정기준, 위원 신상정보(직업 등)	6호	
도시경관단	토지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업무, 공원녹지 조성사업 관련업무	조경설계 관련 검토의견 조치계획 문서	5호
		조경계획 및 설계용역 대가 산정기준 중 단위공사비	7호

		신도시 조경공사 공원녹지 설계 기본계획도,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5호
		택지개발지구 조경 및 공원 조감도, 조경계획	5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요청 문서	5호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 기초자료	7호
공공주택기획처	전사 주택부문 사업관리	개발사업 착수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문서	7호
공공주택사업처	청년주택 인·허가 총괄	공공건설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문서	5호
	청년주택 총괄·기획	연간 발주계획 송부 및 일정준수 요청 문서	5호
공공주택원가처	주택부문 원가관리업무 총괄	최근 3년간 수도권 LH아파트 상세 공사비 내역	7호
미래주택기획처	주택사업 수립·집행·계획 기본설계 업무총괄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확정 문서	5호, 7호
		주택건설사업 설계완료 보고 문서	5호
		주택건설사업 견적도서, 조감도 관련 문서	5호
		주택건설사업 조기공급을 위한 추진일정 관리방안 문서	5호
		실시설계 사전검토 및 마감재 수준 검토요청 문서	5호
		연구용역 발주관련 사전협의 요청 문서	5호, 7호
	부대복리시설 설계	단지 내 지역편의시설(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지자체 협조요청 문서	5호
고객품질혁신단	공공주택 품질·하자 총괄	공공임대아파트 하자발생 건수, 하자처리 건수	7호
지역균형발전처	투자유치 업무	첨단지구 세부 투자유치계획	5호
산업단지처	도첨산단 후보지 추진계획 수립	첨단지구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 알림 문서	7호
민간임대사업단	조사설계용역 및 사업관리	실시설계 진행관련 의견회신 문서	5호

도시재생계획처	경쟁력강화지원지구 업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공무전담기관 업무수행 결과보고 문서	5호
도시재생사업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관리	재생사업 토양오염 정화처리 및 철거관련 의견회신 문서	7호
토지은행기획단	비축사업계획 수립·승인신청	토지비축 승인통보 문서	5호, 7호
도시건축사업단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관련	친환경주택 평가결과	7호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관련	에너지 절감효과 실험(시뮬레이션) 관련 자료	7호
	녹색건축 인증 관련	녹색건축인증 결과알림 문서	1호
	장수명주택 인증 관련	장수명주택인증 검토의견 및 결과알림 문서	7호
	결로방지성능평가 관련	결로방지성능평가 검토의견 및 결과알림 문서	7호
	BF인증 관련	BF인증 검토의견 및 결과알림 문서	7호
주택기술처	주택설계기준 수립 및 관리	설계도서간 불일치 민원 예방을 위한 LH 시방서 개정(안) 문서	5호
	주택분야 공사원가관련 업무	주택건설공사 일위대가 운영기준	7호
건설관리처	주택사업 시공기술 지원 등	층간소음 관련 감사결과 특정사항	5호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계약관리 철저 안내 문서	7호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예고 문서	7호
	건설사업관리 총괄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 문서	5호
	건설공사 품질관련 총괄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	5호
기술심사처	건설공사 기술심의 총괄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표준방안 문서	5호
	계약심사 관리업무	계약심사 의견송부 문서	5호

3.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례 (지역본부 - 업무별)

□ 총무 / 인사 / 조달계약

구 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인사	인사 및 근태관리	직원 개인의 휴가 내역, 상벌 목록	6호
조달계약	계약업무 총괄,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 요청 문서	5호

□ 주거복지

구 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임대주택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운영·관리 업무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특별공급 현황	2호, 6호
		관리사무소 인력운영 현황 - 인력 사용근거, 현재 운영실태	7호
		관리업체 위수탁계약 관련 서류일체	5호
		임대주택 공가세대 관련 정보 (공가사유, 공가발생일, 공가현황)	7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근거 자료	7호
		타인의 임대주택 계약 및 해약관련 사항 - 임대차계약서, 채권관련, 체납사항, 위약금 부과, 보증금 해약환불 문서	6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매입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 체결안내 문서	6호
	전세임대주택 공급·운영	전세임대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	7호
	주거급여 임차가구 등 조사	주거급여사업소 모바일 단말기 운용계획 문서 - 단말기 현황파일	7호
	5년·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	분양전환 가격관련 - 최초 매입가격, 분양전환 심의회 회의록, 타인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서, 분양가격 결정문서 - 최초 입주자 동호수, 분양전환 당시 거주자 동호수, 분양자 동호수	7호
	부도·도시정비 매입임대 업무	부도임대주택 매입신청 접수 및 매입추진 검토 문서	5호
		도시정비 매입임대 인수계약 관련 문서	7호
자산관리	임대주택 시설물 하자관리	임대주택별 보수비 집행 상세 내역 - 예산편성, 집행내역, 공종별 금액	7호
		난방구동기 하자보수 협조요청 문서	5호
		10년차 하자보수보증 해제유보 요청 문서	5호
	재임대 세대 유지보수	임대주택 이전 임차인 퇴거시 세대점검표	6호, 7호
	시설관리 업무 및 유지보수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요청 문서	7호

□ 보상

구 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보상	용지의 취득 및 보상계획 수립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취득방안 수립	7호
		국방부 소관 국유지 취득방안 방침결정 문서	7호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대상자 명단, 이해관계인 정보, 주소, 전화번호	6호
		타인의 보상계약 관련 정보 - 타인의 토지 및 물건조사서 - 타인의 감정평가내역(감정평가서), 계약정보, 세부내역, 수용재결 청구문서 등 -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 문서	6호
	예정지구 보상투기 방지	공공주택사업 예정지구 지구관리방안 수립문서	7호
	지적측량 및 지적정리	예정지적좌표도 예정성과 검토의견	7호
	보상현황 관리	월단위 용지비 지급건수, 금액, 유형 (현금 / 채권 / 대토)	7호
	국공유지 취득 관련 협의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문서	7호
		국유지 무상양여 토지 등 확정을 위한 협의문서	5호, 7호
		사업지구 내 철도용지 처리계획 협조요청 문서	5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생활대책 대상자 명단 -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의 조합 정관, 회의록, 등록번호증명서 등	6호	

□ 토지·주택 판매

구 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토지 및 주택 판매	공급계획 수립	공급공고 전 분양용지 공급계획 (세부 분양일정 등)	5호, 7호
	사업단계별 수지분석 지원	사업지구별 수지분석(수익성) 검토자료 및 결과	7호
	조성원가 산정 및 관리	사업지구 조성원가 산정자료	7호
	공급가격 산정	용지 / 주택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서	7호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심의자료	7호
		용지 임대료 산정액 세부내역	7호
	판매마케팅 및 촉진방안 수립·시행	할부분양 관련정보, 검토방안	5호, 7호
		LH 아파트 브랜드(네이밍) 사용관련 내부규정	7호
		신혼희망타운 건본주택 건립방안	5호
	판매상담 및 계약체결	타인의 분양계약서	6호
	판매관련 부대업무	토지사용승낙 문서	6호
		명의변경 결정문서	6호
		계약해제 검토, 해약 반환금 부담관련 문서	6호
		중심상업용지 임대가능여부 조회 문서	5호
상업용지 개찰에 따른 계약자 명		6호	
특별공급 관련업무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자,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대상자 세부내역	6호, 7호	
	이주주택지 및 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급신청자 명단, 추첨결과	6호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여부 검토 및 신청 요청	공공시설용지 매수계획, 매매계약(안), 협의 안 및 검토사항	5호	
	공공주택지구 내 유지용지 관련 의견회신 문서	5호	

□ 단지개발 / 주택건설 / 도시재생

구 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 업무	사업시행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 하천보도교 추가설치, 보도육교 조치계획 협의 - 지하철 연장노선관련 협조요청 문서, 버스정류장 설치 협의 문서 - 녹지조성 계획, 광역교통대책 자료, 환승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문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협의의견 문서 - 고등학교 부지 사용계획 요청 문서, 행정구역 변경검토 관련 협의 문서 	5호
	사업계획 및 수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전 지구계획·개발계획·사업승인 계획·실시계획 관련 자료 - 도로구역 결정(변경) 신청서 - 소하천 시행계획 수립 및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비용분담 현황, 분담금 및 집행내역, 추진일정 - 지구지정 제안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문서 -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조사용역 준공검사 시행문서 - 공공민간공동사업 컨소시엄 MOU 체결계획, 협약서 - 총사업비 검토자료, 시방서, 공사 작업계획서 -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의뢰 문서 	5호

<p>개발사업에 따른 지원 및 관리업무</p>	<p>세부계획 수립, 설계(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방침문서 - 조사설계용역 발주방침 문서 -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식산업센터 건립방안 문서 - 공공청사 부지 매입시기 및 청사신축 일정 조회 문서 - 종교시설용지 토지사용시기 및 매각시 유의사항 회신문서 - 고등학교 부지 사용계획 회신문서 - 특화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 시행관련 사업협의 요청 문서 - 자전거 도로 조성계획, 개발지구 특화계획 - 각종 현안심의 개최요청, 결과보고, 조치계획 문서 - 지하철도 도로교통소음 저감공사(대책) 시행방안 검토서 -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가로등,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CCTV 등) - 조경(상세 식재) 계획, 근린공원 조정계획 검토의견 - 방음터널 설치계획, 고속도로 진입로 접속부 공사계획 - 방음터널 이격구간 시뮬레이션 결과 - 지하철도 임시개통 방안 보고 문서 - 하도급사 공기연장 간접비 요청관련 문서 - 조성공사 공기연정 간접비 반영 문서 - 저수지구간 토공 시행방안 - 계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VE 결과문서 	<p>5호, 7호</p>
-------------------------------	--	---	---------------

<p>개발사업에 따른 지원 및 관리업무</p>	<p>공사관련 민원, 각종 신고 등 현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요구사항 반영검토 문서 - 사업추진 실무협의회 결과 - 특정시설 이전 건의사항 처리계획 - 아파트 출입구 위치조정 협의요청 문서 -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정화조치, 소송판결문 - 공중화장실 반영 방침 문서 - 공모작품 당선작 관련문서 - 주택품질 개선 서비스 방침수립 문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사토처리계획서, 사토장 관련 신고서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실적보고서 - 토양오염 신고 문서 -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공사구간 간섭 자가망선로 이설방침 문서 	<p>5호, 7호</p>
	<p>공사 계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및 변경 계약서 - 기성금 내역서, 하도급 관련 신고서류 - 수량산출서, 시방서, 공사비 상세내역 - 공사기간 연장알림 문서,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문서 - 실적증명서 - 물가변동 시행에 따른 계약변경 요청 문서 	<p>7호</p>

<p>개발 사업에 따른 지원 및 개발관리 업무</p>	<p>공사 감사·감독·시험·검사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검사 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 감리보고서 - 동절기 현장관리 요령 송부 문서 - 내부감사 보고문서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품질시험성적서 - 방화문 방화성적서, 열관류 성적서, 결로성적서, 기밀성적서 - 아파트 창호 관련 성적서, 엘리베이터 방화성적서, 현설자료 - 하자보수 촉구 및 경고장 발급예고 	<p>5호</p>
<p>공사 관련 기타</p>	<p>도면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변경도, 개발계획 도면(준공 전) - 설계도면, 최초도면, 준공도면(준공 전) - 단위세대 평면도, 조경도면, 조경식재 리스트, 구적도 	<p>7호</p>
	<p>마감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 목록 전체 상세내용, 규격(준공 전) - 단열재, 바닥완충제 제품명, 등급, 시험성적서(준공 전) 	<p>7호</p>